

본 내용은 세계 18개국 46명의 전문가들이 광물과 합성 섬유 사용의 안전에 대하여 토의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 전체가 연재로 소개될 것입니다.

광물과 합성섬유의 안전한 사용 8

(Safety in the Use of Mineral and Synthetic Fibres)

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윤 임 중

부록 1.

자연 또는 인조섬유에 직업적으로 폭로되어 발생하는 건강위험에 관계되는 예방과 보호대책의 개발에 관한 해결(1986년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t Ito, 72nd session 발취)

국제노동기구의 총회

작업조건과 환경개선

작업조건과 환경개선에 관한 결의와 작업조건과 환경분야에 있어서 장래 활동에 관한 결론이 1984년 국제노동기구회의 제70차 분과에서 채택되었다.

유해성 물질의 사용과 잠재적 위험성을 이들 물질의 생산, 저장, 운반하는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에게 직면한 직업성 위험을 증가시킬지 모른다.

유해물질의 직업적 폭로에 의한 건강위해성을 평가, 예방하고 위험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폭로를 관리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작업과정중에 유해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위험성에 폭로되고 있거나 폭로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연수 그리고 앞으로 시킬 연수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전임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와 그들의 조직은 건강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작업조건과 환경개선에 필수적임을 인정하였다.

유해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주된 위험요인의 해소를 목표로 ILO는 감독과 활동을 강화하고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

ILO 회의(1985와 1986) 제71과 제72차 분과회의에서는 석면 사용의 안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자연이든 인조섬유이든 섬유의 사용을 잠재적 위험이 수반할 수 있다.

ILO 산업안전보건시리즈 64호

1.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ILO 이사회의를 초청하였다.

- a) 석면을 제외하고 최근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자연 또는 인조무기성섬유의 건강위해평가를 촉구하고 그 과제에 따른 유기성 분진 폐악을 가능한한 조속히 착수한다.
- b) ILO가 승인한 방책의 범위내에서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의 tripartite group을 결성하고 석면을 제외한 자연과 인조섬유 폭로로 인한 직업성 건강위험과 이에 관련되는 예방과 관리대책의 의문점을 연구도록 하였다.
- c) 관계되는 법 입안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d) ILO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자연 또는 인조섬유 폭로에 의한 직업성 건강위해성과 관계되는 예방과 보호대책을 수행하는데 객관성 있는 활동을 표준화하고 UN기구 특히 WHO와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 e) 수련, 근로감독, 교육 그리고 자연 혹은 모든 인조섬유에 직업적으로 폭로되어 발생되는 잠재적 건강위험성 등의 분야에서 ILO가 제공하는 기술지원과 자문봉사 그리고 필요한 예방과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광산, 제조업, 취급 그리고 자연이든 인조이든 섬유함유물의 사용에 있어서 안전과 건강표준체계를 위한 적절한 법과 지침을 공포하고 이행하도록 ILO의 이사회에 권유하고 이들 규정을 강화함에 있어 근로자와 기업주의 조직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였다.

3. 자연 또는 인조섬유를 수출하는 모든 회원국들은 다양한 기술협력과 같은 양자간에 능동적으로 규칙을 책임지도록 ILO 이사회의 의견을 구하였다.

